

알고싶습니다!

Q&A

호텔이나 콘도미니엄은 연면적 3,000㎡ 이상이면 특수건물인데 유스호스텔은 특수건물이 될 수 없나요?

>>> 특수건물의 범위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건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적용제외 대상]

- ①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이에 따른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3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7조 [수련시설의 종류]

-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에 부대·편의시설 갖추고 숙박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6.6.29, 99.8.7>

이상과 같은 법적 요건에 의거하여 유스호스텔은 특수건물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입니다

NFPA13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기준에 보면 정압시험은 200psi(13.8bar)로 2시간 동안 실시하며 기압시험시 40psi(2.7bar)의 압력을 채우고 24시간동안 11/2psi(0.1bar)이하의 압력 하강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배관공사 완료 후 기압 및 수압시험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압시험은 모든 스프링클러설비가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기압시험은 건식설비의 경우 추가되는 시험입니다. 건식설비는 항상 배관 내에 압축공기를 보유하며 일정압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이상 기압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콜라를 따서 마시고 남은 것을 마개를 잘 막아서 보관하더라도 당장 액체는 새지 않지만 오래 지나면 가스는 새어나갑니다. 건식설비도 누설되는 압축공기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며, 배관 내 공기압이 설정치 아래로 낮아질 경우 컴프레서가 자동으로 가동되어 보충공기를 보급하도록 설치

되어 있습니다. 기압시험은 허용누설량의 범위에 들어오는지 체크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화배관을 설치할 때 소화펌프 토출배관상에 수격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격방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수격방지기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 수격방지기 설치에 대해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행정자치부 예방 13807-493, 2000. 4. 25 참조)
2. NFPA Code 20, 부록편 A-2-10.4에 언급된 수격방지체크밸브와 일반적인 수격방지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수격방지체크밸브는 주 밸브 아래에 있는 체크밸브를 말하는 것으로 역류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수격이 펌프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치합니다.

NFPA Code 20, 부록편 A-2-10.4

자동제어가 소화펌프를 가동 정지할 때 대형 소화설비는 때때로 역류에 의해 심한 수격작용을 받는다. 상황이 수격작용을 일으킬만한 곳에서는 등록된 수격방지 체크밸브가 소화펌프의 토출라인에 설치되어야 한다. 펌프가 가동 정지될 때 높은 건물에서의 자동제어펌프는 수격작용으로부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3. 상기 기준에서 언급된 수격방지체크밸브를 일반적인 수격방지기로 볼 수 있습니까?
>>> 체크밸브와 수격방지기는 설치목적이 다릅니다. 수격방지기는 교차배관 말단에 설치하여 압력파를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원인불명의 화재로 임차물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까?

- >>>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발생 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본 내용은 유사한 질의사항이 있어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 다16652 판결 내용을 소개한 것임) ㉞

본 코너는 방화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답변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아니며,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